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5. 23 선고 2023가단6988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유한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4. 5. 9.

판 결 선 고 2024. 5. 23.

주 문

-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23. 6. 14.자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23. 7. 18. 접수 제252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379602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C은 원고에게 3,895,781원 및 그중 1,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16. 8. 22.자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2016. 9. 9.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D(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자, 망인의 처인 피고(상속지분 3/11), 자녀들인 E, C, F, G(상속지분 각 2/11)은 2023. 6. 14.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23. 7. 18.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접수 제25234호로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C은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제외하고는 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평택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2)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C이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한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은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C은 이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수영

별지